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단1374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8.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주식회사 D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그에 기해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89720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25. ‘C은 원고에게 12,424,833원 및 그중 10,212,202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C의 부친인 망 E은 2021. 7. 3.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과 F, G이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별달리 없었다.

다. C은 2021. 8. 3. 피고, F,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라 한다). 그 다음날인 2018.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2021. 8. 3.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다액의 부채가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일 이전에 발생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은 피고 3/9, C과 F, G 각 2/9이고, C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2012. 3. 26.부터 2013. 6. 21.까지 27,6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고, 이러한 금전관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C이 다른 채무를 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과 피고의 관계 및 C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영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연립주택

지층 347.70㎡, 1층 276.60㎡, 2층, 3층 각 278.87㎡, 4층 244.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의정부시 대 77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6.6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70분의 52.87 플.

